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정관

2023. 11. 14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사회복지법인승가원 정관

[1996. 2. 6. 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승인 (1996. 3. 21.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1996. 4. 21.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1996. 8. 16.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1999. 1. 13.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1999. 9. 21.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0. 10. 23.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2. 5. 13.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3. 6. 26.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4. 3. 22.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7. 10. 25.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0. 4. 21.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3. 3. 6.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3. 5. 3.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3. 6. 28.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4. 3. 24.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22. 3. 30.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23. 11. 14. 성북구청장)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 불교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지 · 종통을 받들고 종헌종법을 준수하며,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사회복지사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라 칭한다. (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에 둔다.

제4조 (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의 사회복지관 운영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9. 「아동복지법」 제44조2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10. 기타 법인 목적달성을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내부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한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 1 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 한다.

② 기본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별표 제 1의 목록의 재산
2. 이사회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제7조 (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과 이 정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시설지원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후원

회원의 후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 (회계의 구분등)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에 지원하는 시설지원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 시설지원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회계의 처리) ①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법인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장이,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설의 장이 각기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개시 5일 이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년도가 끝난후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을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4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1인 포함)

2. 감사 3인

3. 감사 3인중 1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외부추천감사로 선임하며, 1인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 1인은 내부추천감사(공인회계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이사 3년

2. 감사 2년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이사 7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추천하고, 4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외부추천이사로 하며, 3인은 승가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전체 이사 중 7인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 법인의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자가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조계종 승적을 가진 자 중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

리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의 유고 및 궐위 시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 혹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자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때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 (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아니 한다.

제25조 (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9

제26조 (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지원하는 시설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후원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이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의 법인과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법인사무국에서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합되고 또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3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한 후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2. 안건
3. 의사
4. 출석한 임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날인하되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법인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후 원 회

제33조 (후원회) ① 이 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③ 후원회원의 후원금은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5 장 직 제

제 1 절 법인

제34조 (법인 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직제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해 산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때에는 재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계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7 장 공 고 방 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별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3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비송사건 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대한불교조계종 법인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9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1, 임원은
별표2, 법인이 사용할 입장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1996. 2. 6. 서울특별시장 설립허가)
-- 법인설립허가
이 정관은 1996. 2.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3. 21.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제16조 1항 2항 변경, 3항 신설
-- 제18조 2항 변경
-- 제19조 4항 신설
이 정관은 1996.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21.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제1장 제3조 제1항(사무소 소재지)
이 정관은 1996. 4.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16.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제4조 제2항 제3항 신설(사업의 종류)
이 정관은 1996. 8.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3. 서울특별시장 변경허가)
-- 제1장 제3조 제1항(사무소 소재지)
이 정관은 1999. 1.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1.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1장 제4조 1항, 5항 변경, 3항, 4항
신설(사업의 종류)
이 정관은 1999. 9.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3.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1장 제4조 1항 변경, 2항 신설(사업의 종류)
- 제3장 제16조 1목 변경(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3장 제18조 1항, 2항, 3항, 4항, 5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제3장 제21조 1항 변경(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3장 제22조 1항 변경, 2항 삭제, 3항 변경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 정관은 2000. 10.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13.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1장 제4조 1항 변경 (사업의 종류)
- 제2장 제11조 및 12조 (예결산 제출시기)

이 정관은 2002. 5.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6.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3장 제17조 2항 삭제 (임원의 임기)
- 제3장 제18조 4항 및 5항 변경(임원의 선임방법)
- 제3장 제20조 1항 변경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 제3장 제28조 2항 변경
(이사회 개회 및 의결정족수)
- 제3장 제29조 변경 (이사회 의결 제적사유)
- 제3장 제30조 2항 변경 (이사회의 소집)

이 정관은 2003. 6.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2. 서울특별시장 승인)

- 제3장 제16조 1항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3장 제18조 3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제3장 제25조 1항 변경 (임원의 겸직 금지)

이 정관은 2004. 3. 22.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5. 성북구청장 승인)

- 제2장 제10조 1항 변경 (회계의 정리)
- 제3장 제21조 1항 변경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 정관은 2007. 10.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1. 성북구청장 승인)
-- 제3장 제22조 1항, 2항 변경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 제3장 제30조 2항 변경 (이사회의 소집)
이 정관은 2010. 4.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6. 성북구청장 승인)
-- 제3장 제16조 1항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3장 제18조 3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 제3장 제32조 1~5항 변경 (이사회 회의록)
이 정관은 2013. 3.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3. 성북구청장 승인)
-- 제3장 제18조 3항 변경 (임원의 선임방법)
이 정관은 2013. 5. 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8. 성북구청장 승인)
-- 제3장 제16조 1항 변경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정관은 2013. 6.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4. 성북구청장 승인)
-- 제1장 제1조 변경(목적)
-- 제3장 제16조 1항(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8조
3항(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 1항(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변경
-- 제6장 제36조 변경(잔여재산의 귀속)
-- 제8장 제38조 변경(준용규정)
이 정관은 2014. 3.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30. 성북구청장 승인)
-- 제1장 제3조 2항 삭제(사무소)
-- 제5장 제34조 1항, 3항 변경(법인사무국)
-- 제7장 제37조 변경(공고의 방법)
이 정관은 2022. 3.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14. 성북구청장 승인)
-- 제1장 제4조 1항 변경(사업의 종류)
이 정관은 2023. 11. 14.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법인승가원 정관 별표

[1996. 2. 6. 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승인 (2003. 6. 26.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6. 6. 2.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08. 4. 11.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08. 11. 5.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0. 4. 21.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1. 3. 7.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1. 10. 18.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2. 4. 6.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2. 6. 4.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2. 10. 15.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3. 7. 25.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4. 4. 3.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6. 1. 26.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6. 12. 23.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7. 12. 14.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20. 12. 9.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04. 6. 22. 서울특별시장)
 정관변경승인 (2007. 1. 22.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08. 8. 5.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09. 4. 14.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0. 11. 18.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1. 4. 9.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2. 3. 23.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2. 4. 25.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2. 7. 30.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3. 1. 31.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4. 3. 24.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4. 10. 6.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6. 2. 16.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17. 4. 13.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20. 6. 3. 성북구청장)
 정관변경승인 (2022. 11. 18. 성북구청장)

(별표1) 기본재산 목록

기본 재산 목록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단위 : 원)

구 분	소 재 지	규모(m ²)	금 액	출연자	비 고
토 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2	18,502 /대지	1,110,120,000	승가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9	2,500 /대지	217,512,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19	9,584 /임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10	21,000 /임야	393,516,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20	25 /임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18	748 /임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21	89 /임야			

구 분	소 재 지	규모(m ²)	금 액	출연자	비 고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12	3,584 /임야	64,512,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3	18,773 /임야	281,595,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6	272 /대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9	1,425 /임야	28,849,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7	1,319 /대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40	7,083 /임야	146,850,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41	1,388 /임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33	685 /전	20,550,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33-4	1,799 /전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33-9	689 /대지	74,640,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33-8	266 /전	7,448,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4	4,165 /전	70,805,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27	44 /전	748,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28	3,802 /전	64,634,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1	900 /전	15,300,00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11	2,534 /도로	50,680,000	〃	
토 지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314-1	335 /답	10,050,000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314-2	44 /답	1,892,000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317	1,051 /전	1,576,500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323	169 /전	253,500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324	11,276 /전	16,914,000	〃	

구 분	소 재 지	규모(m ²)	금 액	출연자	비 고
토지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49-10	837 / 대지	4,535,008,580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0-5	711 / 대지	5,686,590,380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0-4	598 / 대지	4,505,118,700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0-13	4.189 / 대지	12,000,000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50-22	5.944 / 대지	16,000,000	〃	
건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80-32	5,732.19	6,229,010,040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필리 29-9	662.84	722,560,000	〃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49-10, 150-4, 150-5, 150-8, 150-13, 150-14, 150-22	4,546.9	15,022,559,633	〃	
토지 및 지상 건물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삼우빌라트 102호 412-42	대지 61.09 건물 107.7	105,000,000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35 헬로우APM 제5층 제175호(지분1/3)	대지 1.13/3 건물 3.77/3	4,600,000	〃	대 지 〃 0.75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35 헬로우APM 제5층 제176호(지분1/3)	대지 1.13/3 건물 3.77/3	4,600,000	〃	건 물 〃 2.5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780외1필지 이천 장호원코아루1단지 101 동 1101호	대지 46.217 건물 84.783	223,000,000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17-18 장호원현대 아파트 101동 1902호	대지 46.619 건물 131.070	212,000,000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17-18 장호원현대 아파트 101동 702호	대지 46.619 건물 131.070	216,000,000	〃	

토지 및 지상 건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 17-18 장호원현대 아파트 101동 1904호	대지 건물	30.037 84.450	172,500,000	₩	
현금				30,000,000	₩	
계		127,689.978 (토지116,218.465) (건물11,483.513)		40,274,992,333	₩	



(별표3)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이사장의 인

3) 계 인

